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서영교·박희승·임오경

박지원 • 이훈기 • 윤준병

위성곤 · 임호선 · 이해식

한정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특별법」 또는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.

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,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·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 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	제42조(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)
① 「초・중등교육법」 및	①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	
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	
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	
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	
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	
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	
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등"이	
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기숙사(「한국사학진흥재단	
법」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	
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)로	
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	
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	
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	
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	
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	
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	
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	
각각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 면	<u>2027년 12월 31일</u>
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	

느	ਰੋ	나네	해	당하는	た	] 우	コ
해도	j	부분¢	ની	대해서	는	면저	된
취득	투자	게를 추	-징	하다.			

- 1.・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